

#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학칙

(일부개정) 1977-04-06 규칙 제 888호

(일부개정) 1982-01-30 규칙 제 1242호

(일부개정) 1991-10-22 규칙 제 1926호

(일부개정) 2020-04-20 규칙 제 2947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라 “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'91.10.22., 2020. 4. 20.>

**제2조(교육계획)** ① 경상북도인재개발원(이하 “인재개발원”이라 한다)장은 매년도 교육시작 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"피교육자"(이하 "학생"이라 한다)차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'91.10.22., 2020. 4. 20.>

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교육반 및 반별 교육대상 구분
- 2.교육과목별 교육요목 및 배정시간
- 3.교육일정 및 교육시간
- 4.기별 기관별 학생차출 계획
- 5.학생등록 절차
- 6.기타 필요한 사항

**제3조(학생등록)** 학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.<개정'82. 1.30., 2020. 4. 20.>

**제4조(학생준수사항)** ① 학생은 학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.

② 제1항의 학생수칙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 4. 20.>

**제5조(출석점검)** 학생은 교육시작 5분전에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.<개정 '91.10.22>

**제6조(수업시간)** 수업시간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 4. 20.>

**제7조(휴강)**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강한다. 다만,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4. 20.>

**제8조(결석 및 결강)** 학생은 교육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4. 20.>

- 1.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
- 2.기타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<개정 2020. 4. 20.>

**제9조(교육평가)** 학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4. 20.>

**제10조(근태평가)**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 그 감정기준은 이를 따로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 4. 20.>

- 1.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
- 2.결석·결강·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
- 3.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- 4.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<개정 2020. 4. 20.>
- 5.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
- 6.교관 강사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
- 7.기타 인재개발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<개정 2020. 4. 20.>

**제11조(담임교관등)** ① 교육의 운영과 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학급에 담임교관을 둘 수 있다.  
 ② 정신교육과정 전문과정 등 필요한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청할 수 있다.<개정'91.10.22>

**제12조(성적석차)** 학생의 수료성적 석차는 과정별, 교육반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을 때의 석차는 인재개발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0. 4. 20.>

**제13조(표창)** 인재개발원장은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자, 공로자 또는 학생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자를 표창할 수 있다. 다만,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명 이내로 한다.<개정'91.10.22., 2020. 4. 20.>

**제14조(수료증 수여)**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성적이 100점만점에 총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는 [별지 서식]의 수료증을 수여한다. 다만, 단기교육과정의 수료증 발급은 생략하고 소속기관에 통보로서 갈음한다.<단서신설'91.10.22> <개정 2020. 4. 20.>

**제15조(성적통보)** 인재개발원장은 학생의 교육성적을 당해 교육수료식후 학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20.>

**제16조(학적부관리)** 교육 이수자의 학적은 인재개발원장이 작성 보관한다. 다만, 교육 이수자가 다른 교육원 관할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재개발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출지 인재개발원장에게 원본을 송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한다. <개정 2020. 4. 20.>

**제17조(도서)**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 4. 20.>

**제18조(학생자치)** ① 학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.  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 4. 20.>

**제19조(위임규정)**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 4. 20.>

**부 칙**

이 규칙은 197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(1982. 1.30 규칙제1242호)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1991.10.22 규칙제1926호)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규칙 제2947호, 2020. 4. 20.> (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**

**제1조(시행일)**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** 생략

**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학칙”을 “경상북도인재개발원 학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“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”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에서”를 “「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라 “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경상북도인재개발원(이하 “인재개발원”이라 한다)장”이라 한다.

제3조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단서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호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교육원”을 “인재개발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교육원장”을 각각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서식 중 “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”을 “경상북도 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